

보도시점

(전매체) 12. 12.(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 통로 넓힌다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12)
-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폐지 및 상장 주식 투자제한 완화,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 등 시행(12.2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조건부 융자, 벤처기금(펀드)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조건부 지분전환계약이 제도화되면서 민간 투자재원이 창업·벤처기업의 성장자금으로 활발히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인수합병(M&A) 기금(펀드)의 신주 투자 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12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선진 벤처금융기법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500억원 규모의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 자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② 종전에는 벤처기금(펀드)의 차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벤처기금(펀드)가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규모 투자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투자목적회사의 금융기관 차입을 보증하는 ‘투자연계(매칭)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③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투자자가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투자 제도이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하여 민간 투자자금의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벤처투자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의 도입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연학 (044-204-7711)
			주무관	오선혜 (044-204-7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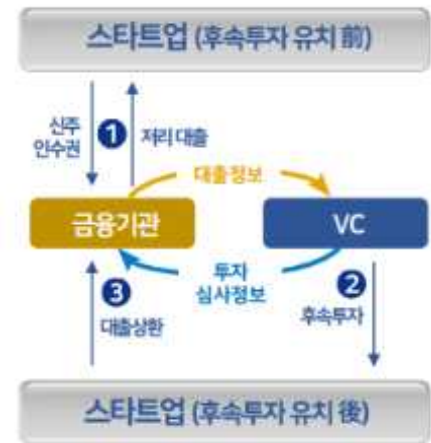
참고1

투자조건부 융자 개요

□ 개념

-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투자를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의 저리 대출**을 통해 자금 애로를 해소
- 금융기관은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고, **후속 투자금으로 대출을 상환**받음

*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만큼 저리융자가 가능하며, 융자·대출상환이 벤처투자자와 상호 연동되도록 VC와 금융기관간 심사 정보를 교환



□ 참여주체

- **(융자기관)** 은행, 기금관리기관(44개*), 신기사
 - * 벤처투자법 제71조(기금의 투자 등)에 따라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를 할 수 있는 기금관리기관 (중진공, 기보 등)
- **(수혜기관)** 비상장 창업·벤처기업(코넥스 상장기업 포함)
- **(투자기관)** 벤처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등

□ 융자기관의 신고의무

- 만기·이자 등 융자 조건, 신주 배정·인수 실적에 대해 융자기관의 분기별 신고 의무 부여

□ 융자기관과 투자기관의 상호제공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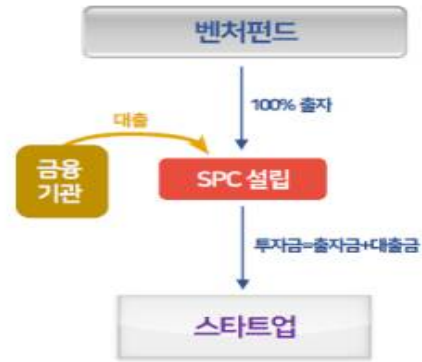
* 자료 상호제공에 대한 융자 수혜기업의 사전 동의 필수

- **(융자심사 자료)** 경영능력 분석,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
- **(투자심사 자료)** 산업 분석, 제품·기술 및 서비스 분석, 기업가치 분석,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

□ 개념

- 벤처투자조합이 금융기관의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차입재원을 대규모 후속투자로 활용할 수 있는 스케일업 투자수단 마련

*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사모펀드와 달리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지 않음



□ 차입·재산운용 요건

- (차입한도) SPC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처럼 자기자본의 400% 이상의 차입 제한
- (투자비율) 차입금을 포함한 SPC 재산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 되도록 벤처투자조합과는 별도로 투자의무비율 60% 부여

- (운용·관리)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단일기업·사업(1회 투자)으로 한정, SPC설립·차입시 조합 (변경)등록, 출자 전 조합원 특별결의 의무 부여

* 벤처투자조합 업무운용상황 보고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하여 보고

- (SPC 지분 참여) 책임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M&A 펀드에 한해 피인수·합병법인 임원·대주주의 SPC 지분 참여 허용* (지분을 40% 이내)

* 일반 벤처펀드는 투자목적회사에 단독으로 100% 지분 출자, M&A 펀드는 60% 이상 출자

참고3

조건부지분전환계약 개요

□ 개념

-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기업가치가 책정되는 투자유치 시 지분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
- 대출 위험 감소로 투자자의 초기기업 투자결정이 용이



관련 참고

구분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onvertible Note)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성격	사채	대출+사채	지분투자
이자·만기 유무	있음		없음
지분가격	사전에 결정	후속투자 유치시 지분 전환가격 결정	후속투자 유치시 지분 인수가격 결정
지분취득 시기	사전에 결정	후속투자 직후	후속투자 직후
전환을 위한 상한선 또는 할인을	없음	전환을 위한 기업가치 상한선 또는 주당 발행가액의 할인을 존재	
조건 충족시 전환	투자자 선택 (사채유지/지분전환)	조건 충족시 지분 전환 (미충족시 대출로 유지)	조건 충족시 지분 인수 (미충족시 투자자 손실)

□ 세부요건

- 후속투자의 기업가치와 지분 전환 조건을 연동한 전환사채 발행 계약 체결
- 후속투자 여부에 따라 원리금 상환 의무 변동
 - * (투자유치 성공) 전환사채 발행계약일 전까지의 원리금 상환의무 소멸
 - (투자유치 실패) 원리금 상환
- 주주 및 타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해 계약 체결시 주주 전원의 동의, 계약 체결 이후 타 계약당사자에 대한 고지 의무 부여